



【검토보고서】

2017.11.20.(월)
제 286 회 임시회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헌】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사회복지과)

나. 제출일 : 2017년 11월 6일

2. 제안이유

다양한 보훈사업 추진,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훈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나. 보훈회관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다.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및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라. 보훈회관의 운영 형태 및 운영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 마련함(안 제5조)

마. 보훈회관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안 제8조, 안 제10조)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운영비 및 인건비(182,521천원) 2018년도 본예산 반영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17. 9. 27. ~ 2017. 10. 17. (20일)

2) 도 관련부서 : 경기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5. 검토의견

가. 제정 사유

- 기존 보훈회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8개의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만이 활용하였으며, 노후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오랜기간 제기되었던 양주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5월 착공하여 건립중인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관련법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조례안 구성 개요

-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 구성 내용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조례제정 목적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 : 양주시보훈회관, 위치 : 화합로 1341(덕정동)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의 기능
제4조	입주단체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 가능
제6조	시설의 이용	보훈단체 가입회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수탁자 또는 수탁단체
제7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수 없음
제8조	원상복구	수탁자의 시설물반환시 원상복구 의무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조건위반, 관리운영능력 없을 경우 등 위탁계약 해지
제10조	손해배상	안건과 관계있는 위원의 제척규정
제11조	준용	그 외의 사항 양주시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준용
제12조	시행규칙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 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 주요 내용

1) 목적 (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및 위치 (안 제2조)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양주시 화합로 1341(덕정동)에 둔다.

3) 기능 (안 제3조)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입주단체 (안 제4조)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5.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7.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8.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5)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제5조 ~ 제10조)

- 양주시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운영비는 입주단체 부담원칙이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함

※ 2018년 예산 산출내역

- 운영비 : 44,464천원
- 인건비 : 138,057천원(보훈회관 입주단체 간사 5명)

생활임금인 8,900원으로 비용추계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제7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라. 종합 검토 의견

- 우리시에서는 기존 보훈회관이 운영중에 있으나 그간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재하였고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5월 착공하여 새로이 건립중인 양주시 보훈회관의 건립과

발맞추어 신규 보훈회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임

-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의 관리와 보훈관련 단체의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양주시 보훈회관 신축공사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양주시 화합로 1341(덕정동)
- 사업기간 : 2015. 1. ~ 2017. 12.
- 총사업비 : 2,866,000천원 (시비 2,366,000천원 / 국비 500,000천원)
- 사 업 량 : 부지면적 309㎡, 건축면적 206.76㎡, 연면적 901.83㎡, 지상 5층

□ 자원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까지 사업비)	2016년 최종예산	2017년 본예산 (A)	2017년 1회추경 (B)	증감 (B-A)	향후투자	비고	
재 원 내 외	계	2,866,000	1,175,000	1,175,000	1,441,000	1,691,000	250,000	0	100%
	국비	500,000	250,000	250,000	0	250,000	250,000	0	17%
	도비	0	0	0	0	0	0	0	
	시비	2,366,000	925,000	925,000	1,441,000	1,441,000	0	0	83%
내 외 부 유	계	2,866,000	1,175,000	1,175,000	1,441,000	1,691,000	250,000	0	100%
	공사비	2,714,000	1,054,000	1,054,000	1,410,000	1,660,000	250,000	0	95%
	설계비	121,000	121,000	121,000	0	0	0	0	4%
	감리비	31,000	0	0	31,000	31,000	0	0	1%

□ 추진현황

- 2014. 09. 2015년도 중장기재정계획 반영
- 2015. 01. 보훈회관 건립계획 수립
- 2015. 02.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신청
- 2016. 02. 보훈회관 건립 변경계획 수립(덕정동 → 삼송동)
- 2016. 06. 보훈회관 건립 변경계획 수립(삼송동 → 덕정동)
- 2016. 06.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2016. 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승인
- 2016. 08.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
- 2016. 09.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6. 10. 설계(안) 보훈단체장 의견수렴 간담회 실시

- 2017. 03. 보훈회관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
- 2017. 0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BF) 완료
- 2017. 04.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7. 04. 계약심사 완료
- 2017. 04. 보훈회관 신축공사 발주
- 2017. 05. 보훈회관 신축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017. 12. 보훈회관 신축공사 준공

□ 시설 배치계획

구 분	설 계 안		비 고
입주예정단체	보훈 8개단체		
사업규모	- 부지면적 : 326㎡ - 건축면적 : 227.63㎡, 연면적1,138.15㎡(지상 5층)		344평
주요시설 예상면적	1층	· 주차장 191.33㎡ (57평) · 엘리베이터/계단 36.3㎡ (11평)	총면적 1,138.15㎡ (344평)
	2층	· 사무실 : 4개소 / 147.06㎡ (44평) · 화장실 : 2개소 / 16㎡ (5평) · 복도/엘리베이터/계단 / 64.57㎡ (19평)	
	3층	· 사무실 : 4개소 / 147.06㎡ (44평) · 화장실 : 2개소 / 16㎡ (5평) · 복도/엘리베이터/계단 / 64.57㎡ (19평)	
	4층	· 사회의실 : 1개소 / 74.8㎡ (23평) · 휴게실 : 1개소 / 72.26㎡ (21평) · 화장실 : 2개소 / 16㎡ (5평) · 복도/엘리베이터/계단 / 64.57㎡ (19평)	
	5층	· 대회의실 : 1개소 / 171.21㎡ (51평) · 화장실 : 2개소 / 16㎡ (5평) · 복도/엘리베이터/계단 / 40.42㎡ (12평)	
시설배치	5층	대회의실, 화장실, 복도	
	4층	소회의실, 휴게실, 화장실, 복도	
	3층	사무실(4),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2층	사무실(4),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 위치도 및 사진현황

